

신한패밀리케어종신보험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신한패밀리케어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 보험종목의 명칭

| 명칭 | 보험종목 | | |
|-----------------------------------|------------|-------|----|
| 신한패밀리케어종신보험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보장형 계약 | 해약환급금 | 1종 |
| | | 일부지급형 | 2종 |
| 신한패밀리케어종신보험 (무배당) | | 일반형 | |
| 신한패밀리케어종신보험(무배당, 적립형 계약) | 적립형 계약 | | |
| 신한패밀리케어종신보험(무배당,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 | |

- (주) 1. 다만, “일반형”의 경우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 산출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며,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운영한다.
 2. 적립형 계약 및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은 보장형 계약에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장형 계약

| 가입가능 조건 | | | | | | |
|----------------|-----|------|----------|------------------------|------|----------|
| 유형1 | 유형2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남자나이 | 여자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1종 | 종신 | 10년납 | 만15세 ~Min[(80-년납),70]세 | | 월납 |
| | 2종 | | 15년/20년납 | | | |

(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적립형 계약(전환형)

| 가입가능 조건 | | | | | | |
|---------|-----|------|----------|-----------|------|----------|
| 유형1 | 유형2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남자나이 | 여자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 - | 종신 | 종신 | 22세 ~ 80세 | | 월납 |

(주) 1. 적립형 계약의 보험기간은 “적립형 계약 전환일”부터 종신까지로 한다.

2. 적립형 계약의 가입나이는 “적립형 계약 전환일”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로 한다.

다.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전환형)

| 가입가능 조건 | | | | | | |
|---------|-----|--------------------------|----------|-----------|------|----------|
| 유형1 | 유형2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남자나이 | 여자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 - | 85세, 90세, 95세, 100세만기 | 일시납 | 30세 ~ 70세 | | 일시납 |

- (※) 1.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의 보험기간은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전환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까지로 한다.
- 2.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평생간병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의 보험기간은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전환일”부터 최종 중증치매 평생간병비 지급사유 해당일까지로 한다.
- 3.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의 가입나이는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전환일”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로 한다.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만, 특약 가입 간 의무가입사항은 해당 특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영되며, 관련내용은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나. 적립형 계약

①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는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 보험가입 금액의 1% 이하로 한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 전환일”(“18.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후 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해당 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누계액이 기본보험료가 해당 월까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하다.

③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적립형 계약 전환일” 이후 해당월 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0%에서 해당시점까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적립형 계약에 한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에 합산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④ “③”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추가납입 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③”의 한도를 적용한다.

국고채수익률이 이 계약의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적립형 계약에 한함)”에서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

(※)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다.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설정한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일시납보험료를 말한다.

6. 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유지보너스”를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액에 더하여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적립한다. 다만,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해당 월의 보험료(84회차, 120회차, 180회차 또는 240회차)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일을 유지보너스 발생일로 한다.

※ 유지보너스 = 주계약 보험료×12×유지보너스 비율

| 유지보너스 발생일 |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유지보너스 비율 | | |
|---------------------|-----------------------|------------|------------|
| | 10년납 | 15년납 | 20년납 |
| 보험계약일부 7년시점의 계약해당일 | 9.0% x 7 | - | - |
| 보험계약일부 10년시점의 계약해당일 | - | 10.0% x 10 | 19.5% x 10 |
| 보험계약일부 15년시점의 계약해당일 | - | 10.0% x 5 | 10.0% x 5 |
| 보험계약일부 20년시점의 계약해당일 | - | - | 10.0% x 5 |

- 나. 유지보너스를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액에 가산하기 위해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유지보너스 지급적립액을 적립한다.
- 다. 유지보너스 및 유지보너스 적립액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보험료가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유지보너스 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지급적립액”을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 마.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지보너스 지급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약관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해당 적립액을 해약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에 한함)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에 한하여 계약자는 당월분을 제외하여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으며,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영수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보장형 계약 및 적립형 계약의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에서 정한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① 연체보험료

(1) 보장형 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연체된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2) 적립형 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총당되지 못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다만, 해당 금액 이상의 금액을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함]

② 연체이자

연체보험료를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9.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 이율로 계산한 금액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점의 평균 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나. 적립형 계약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0.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적립형 계약에 한함)

가. 적립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 전환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적립형 계약 전환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서 적립형 계약의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자적립액 인출할 경우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하다.

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 만큼 차감되므로, 인출 이후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적립형 계약에 한함)

가. 이 계약의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공시기준이율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①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1)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

(2)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3)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4)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 수입」은 계정 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 「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②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_1)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_2)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_3)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_4) \end{aligned}$$

(2)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3)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4)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_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_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_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_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③ 운용자산이익률

(1)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2)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3)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4)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라. “다”의 공시이율은 동종계정에 있는 동종상품(“다”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적립형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된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25%를 적용한

다.

사.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영규정”을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이 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10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 “일반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 나. 이 계약이 보험계약일부터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10년」 이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였으나 해당시점까지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고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여 해당시점까지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반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 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나”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한다.
- 마. “가” 및 “나”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일반형”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다.
- 바. 회사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일반형”과 비교·안내한다.
- 사. 회사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14.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적립형 계약에 한함)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①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부분 해약환급금」
+ 전환시점 이후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누계액

②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전환시점 이후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누계액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해당 감액(또는 인출)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또한, 다음에서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 전에 감액(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1) 기본보험료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frac{\text{감액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2) 기본보험료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frac{\text{감액 직후 추가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추가 계약자적립액}}$

②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1)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frac{\text{인출 직후 기본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기본 계약자적립액}}$

(2)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 $\frac{\text{인출 직후 추가 계약자적립액}}{\text{인출 직전 추가 계약자적립액}}$

15.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형 계약에 한함)

적립형 계약의 경우, “적립형 계약 전환일” 이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에서 정한 방법 및 한도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다.

16.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적립형 계약에 한함)

가. 적립형 계약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라 함은 다음과 같다.

$$\text{월대체보험료} = \text{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 \text{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월대체보험료는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 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관리비용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한다.

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청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얻는다.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된다.

17.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연금전환특약의 부가로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연금전환특약의 연금액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와 산출기초율[연금사망률, 계약관리비용, 전환당시 산출기준에 따른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을 적용한다.

18.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형 계약 전환일” 당시에는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보장형 계약의 경우
- ②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부터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10년」이 지난 경우
- ③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④ 표준하체인수특약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 또는 표준하체인수특약이 부가되었으나,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닌자로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선택한 경우

나. “가”에 따라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6배로 한다.

- 다. “가”에 따라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다음에서 정한 자 중 1인을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선택하여야 한다.
- ①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②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 중 1인
- 라. “다”항에 따라 선택하는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다”에서 정한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마. “가”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전환 신청일[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적립형 계약 전환일”은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
- 바.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 전환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적립형 계약 전환일” 이후에는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취급하지 않는다.
- 사. “다”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적립형 계약 전환일”부터 교체 전 피보험자는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 아. “적립형 계약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보장형 계약 보험료”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으로 연동하는 특약」을 제외하고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 자.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 ① 전부전환의 경우 “적립형 계약 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을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으로 대체한다.
 - ② 일부전환의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을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으로 대체한다.
- 차.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전환할 경우,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동 변경된다.
-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
- 카. 기타 적립형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 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보장형 계약 가입 당시의 적립형 계약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및 산출기초율(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 적용위험률, 적용사업비율 등)을 적용한다.
- 파. 적립형 계약에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계약자에게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하. 적립형 계약에서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 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19.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보장형 계약의 일부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최대 1,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형 계약을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유효한 보장형 계약의 경우
 - ②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부터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10년」이 지난 경우
 - ③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시 설정한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일시납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 ④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 ⑤ 표준하체인수특약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 또는 표준하체인수특약이 부가되었으나,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닌자로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선택한 경우
- 다. “가”에 따라 보장형 계약의 일부를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다음에서 정한 자 중 1인을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선택하여야 한다.
 - ①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②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 중 1인
- 라. “가” 및 “다”에도 불구하고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계약인수지침 등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형 계약의 일부를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 마. “가”에 따라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전환 신청일[진단계

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전환일”은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

- 바. 계약자는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전환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전환일” 이후에는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취급하지 않는다.
- 사. “다”에 따라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전환일”부터 교체 전 피보험자는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 아.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보장형 계약 보험료”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으로 연동하는 특약」을 제외하고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 자.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전환일부턴 그 날을 포함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경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또는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로 진단된 경우 그 날부터 약관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승낙 및 효력 발생]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 전 보장형계약의 약관규정을 적용합니다.
- 차.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보장형 계약 가입 당시의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및 산출기초율(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 적용위험률, 적용사업비율 등)을 적용한다.
- 카. 기타 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 전환 후 계약의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장형 계약 가입 당시의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20. 종신전환형 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당시 회사가 정한 종신보험으로 전환 되며,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을 할 수 없다.
 - ① 보장형 계약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부턴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10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③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후의 피보험자가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후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가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④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⑤ 표준하체인수특약이 부가되고,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를 종신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선택한 경우

나. “가”에 따라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다음에서 정한 자 중 1인을 종신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선택하여야 한다.

①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②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 중 1인

다. “나”항에 따라 선택하는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나”에서 정한 종신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라.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일시납으로 하며, 피보험자 가입나는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납보험료로 한다.

바. “가”에 따라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전환 신청일[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종신전환형 계약 전환일”은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

사. 계약자는 “종신전환형 계약 전환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종신전환형 계약 전환일” 이후에는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취급하지 않는다.

아. “나”에 따라 종신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종신전환형 계약 전환일”부터 교체 전 피보험자는 종신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자. “종신전환형 계약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보장형 계약 보험료”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으로 연동하는 특약」을 제외하고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차. “가”에도 불구하고, “나”에 따라 선택하는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 직전에 이미 납입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일부 전환인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전환 후 종신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카. 기타 사항은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타. “카”에도 불구하고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해지 또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유지되는 경우 해당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종신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 후 계약이 아닌 보장형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1. 제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 가. 뉴라이프케어서비스는 회사에서 정한 서비스 부가기준을 충족하고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한하여 스페셜케어서비스 및 베이직케어서비스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 스페셜케어서비스는 간호사 병원 동반 및 질병관리 교육, 간병인 지원 서비스,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베이직케어서비스는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명의안내 및 진료예약, 전화 심리상담 제공 등을 포함한다.
- 나.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에게 있다.
- 다. 본 서비스는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22. 기타

-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 다. 제휴업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상품명 앞에 제휴업체명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 라. 회사는 적립형 계약 전환 후부터 기본보험료를 1년 이상 납입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월대체보험료의 정의
 - ②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감소되며 계약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
 - ③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대체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 ④ 향후 기본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지 않는 경우 월대체보험료로 총당 가능한 최대 개월수
- 마. 회사는 계약자가 보장형 계약 가입시 및 적립형 계약,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또는 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에 보장형 계약과 적립형 계약, 치매간병전환형 계약 또는 종신전환

형 계약을 비교·안내한다.

바. 회사는 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가능일(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부터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10년」 시점) 및 종신전환형 계약의 산출기초율(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 적용위험률, 적용사업비율 등) 변경일 15일 전까지 해약환급금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용, 보험료 변경내용, 종신전환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한다.

사. 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치매간병전환형 계약으로 전환 시에 한함)

- ①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 ②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 또는 장기간병상태를 보장하는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을 체결(특약 가입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대리 자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자가 미지정을 요청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②”에 따라 계약체결시 지정하는 경우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 수령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가입시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정 사유 구분, 모집인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관리 등 치매로 인한 보험금 청구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별첨 제1호)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 기준 : 성별, XX세, XX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XX원, 특약 제외

▣ 납입보험료 비교

| 구 분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일반형 |
|-----|-------------|-----|
| 보험료 | | |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 경과기간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 일반형 | |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 | | |
| 3년 | | | | |
| 5년 | | | | |
| 9년 ^{주)} | | | | |
| 10년 | | | | |
| 20년 | | | | |
| 30년 | | | | |
| 50년 | | | | |

※ 상기 환급률은 경과기간동안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주) 해약환급금이 급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전후연도가 비교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표는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 산출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형”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형”은 상기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이며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아래 **밑줄 및 색상처리된 부분**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 방식(화면 터치(체크), 문자 입력 등)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본인은 보험계약일부터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10년」 이내 중도해지시 “일반형”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을 선택하였습니다.

- 다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계약일부터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여 해당

